영문지발전위원회 규정

2019 년 12 월 09 일 개정
2023 년 11 월 01 일 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의 사업 중 다음 사항을 심의 추천하기 위하여 영문지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1) 영문학회지(JECST) 발간에 대한 편집 및 출판
(2) 영문학회지의 SCI화 추진
(3) 우수 논문상 수상 후보 추천 및 시상 업무
(4)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교환
(5) 기타 본회 학술 진흥에 관한 사업

제2조 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위 원 장	1명
상임위원	약간명
실무위원	약간명

제3조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제4조 위원장은 당해년도에 한하여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나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당해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6조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